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375,950	10,511,279
일반회계	321,794,054	9,653,822
특별회계	28,581,896	857,457
기타특별회계	28,581,896	857,457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462,188	73,866
섬진강댐특별회계	4,982,000	149,46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047,038	91,411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5,792,798	173,7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2,865	13,886
기반시설특별회계	79,358	2,3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867,958	326,0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7,691	26,631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83,058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